

최저임금 해결사 「일자리 안정자금」



1. 안정자금 지원대상

◆ 사업주 요건 : 30인미만 고용 모든 사업(주)

* 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은 30인이상 사업주도 가능

<지원 제외 사업주> --- 뒷면 자료 참조

- ①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5억원 초과, 법인의 경우 연간 당기순이익 5억원 초과)
- ②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
- ③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명단 공개사업주
- ④ 인위적 고용조정(해고, 권고사직 등) 기업

◆ 근로자 요건
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단, 고용보험법 상 적용제외사업장 근로자도 지원가능(합법취업 외국인, 개인운영 5인미만 농·어업근로자 등)
-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고,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근로자 (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5일 이상 고용)
 - * 기본급 + 통상수당·야간·휴일근로수당 +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+ 각종 상여금 등 포함
 - * 일용근로자는 1일기준 87,000원미만,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

< 지원 제외 근로자 >

- ①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
- ② 특수관계인(사업주, 사업주의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존비속), 건설일용직 근로자

◆ 지원금액 :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(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중 사업주 선택)

주40시간이상, 월보수 190만원미만 근로자	■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정액 지급
주4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	■ 30~39시간 : 12만원 ■ 20~29시간 : 9만원 ■ 10~19시간 : 6만원 ■ 10시간미만 : 3만원
일용근로자 - 월근로일수 기준 (8시간기준)	■ 22일이상 : 13만원 ■ 19~21일 : 12만원 ■ 15~18일 : 10만원 (8시간미만일 경우 근로시간비례지급)

2. 안정자금 신청방법

- ◆ 신청기간 : 2018. 1. 1. ~ 12. 31 (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, 최초 지급 희망월부터 소급지원)
- ◆ 신청서류 : 신청서 + 2018년도 최초 1개월분 임금지급 증빙서(임금대장, 이체내역, 급여통장사본 등)
- ◆ 신청방법
 - 인터넷 신청 :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사회보험3공단 EDI전용 웹사이트
 - 방 문 신청 :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,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
- ◆ 문의처 :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, 고용노동부(국번없이 1350),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

<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(주) >

- ① 국가, 지자체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**사회복지시설**
*노인·아동·장애인·정신보건·노숙인·일반·결핵한센인·한부모가족·여성·다문화가족 등
- ② 정부 등이 **특정목적 수행**을 위해 **개별법** 등에 따라 **설립·운영비 등을 지원**하는 기관
*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, 여성 새로일하기센터, 외국인력지원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창조경제혁신센터, 여성인력개발센터, 고령자인재은행,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,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, 대학청년고용센터, 대학일자리센터,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, 창업보육센터, 국방취업지원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, 소상공인지원센터, 건설인력 종합지원센터, 해바라기센터, 재향군인회, 생활체육회, 육아종합지원센터, 청소년상담 복지센터, 여성교육문화센터, 농업인종합지원센터 등
- ③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으로 운영되는 **노인장기요양기관**
- ④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**어린이집·유치원**
*사업(주)의 주 수입원이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**장애인활동지원기관·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·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도 제외**
-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(지정)된 **사회적기업**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**자활기업**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**장애인직업재활시설**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
- ⑥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

○사회적기업, 자활기업,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

○사회복지시설·장애인활동지원기관·노인돌봄 종합서비스제공기관,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중 국가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(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)를 첨부하여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